



3.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연체한 경우
4.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5. 본인의 채권자가 구매기업에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한 경우
6. 본인이 대출약정상의 대출원리금 또는 은행에 대한 다른 여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
7.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은행의 전자결제제도를 통해 물품 등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8. 구매기업이 본인의 자금유통만을 목적으로 추천하였거나 또는 납품실적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9. 구매기업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0. 매출채권의 이중 양도 여부, 권리의 하자 및 구매기업의 항변권 유무 등에 관한 본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제5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은행의 시스템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게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

**제6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은 이를 즉시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1. 은행이 구매기업과 체결한 “미래채권담보대출 협약(실적부 방식)”이 종료된 경우
2. 구매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구매기업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구매기업이 은행에서 정한 미래채권담보대출(실적부 방식) 약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4. 구매기업에서 협력업체 추천 취소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5. 본인이 타행과 중복하여 미래채권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6. 은행의 동의 없이 결제방법 및 전자결제은행을 변경한 경우
7. 구매기업에서 추천한 협력기업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납품실적 등)
8.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규정한 기한 전 변제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대출약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제7조 (추가약정서의 효력)**

이 추가약정서, 원 약정서,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추가약정서를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제 8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

(인)

본 인 : (인)